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기간 확대 〉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34호)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섭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1. 19.
3. 회 부 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명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개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기간에 대한 현행법의 상한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폐지하고, 사건의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 등록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 ----- -----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 ----- ----- ----- ----- -----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② -----공 개기간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9조제1항1)은 법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의 등록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2)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 ⑦ (생략)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

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³⁾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 벌금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러한 실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①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 ②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③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15년, ④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장 등록기간까지 공개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개정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등록정보의 공개기간 또한 최대 사망한 날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그 취지를 둔 제도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법무부장관은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개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이 송달받은 정보를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하며, 공개정보는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④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⑤ 사진, ⑥ 등록대상 성범죄요지(판결일자, 죄명, 선

고형량), ⑦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⑧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8가지임.

신상정보 공개는 2007. 8. 3. 열람명령 제도 도입(2008. 2. 4. 시행)⁴⁾으로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2009. 6. 9. 공개명령 제도가 도입(2010. 1. 1. 시행)⁵⁾된 이후 등록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공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 12. 20.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30년까지 차등화⁶⁾하였는데, 공개기간은 변화가 없었음.

현행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의 등록·보존·관리(최대 30년)-공개(최대 10년)-고지(공개기간 내)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성범죄자가 사망한 날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및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의 실효 기간을 규정한 목적⁷⁾

4)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5)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412호)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은 재범하지 않은 전과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려는 것이며,

형이 실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사회화에도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① 형의 효력이 법적으로 사라진 이후에도 범죄 사실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② 3년 초과 징역·금고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일률적으로 사망 시까지 공개된다면 지나친 장기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③ 성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갱생 가능성 차단으로 재범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예상되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의 성범죄자 관리·감독 수단인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일반 국민에 대해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 제한이 보다 중대하고, 형이 실효된 이후에도 장기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회복귀 저해 가능성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644
